

부산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0가합46666 판결 [주식매매대금청구 등]

재판경과

부산고등법원 2023. 1. 12 선고 2022나54514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0가합46666 판결

전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석률

담당변호사 강정목, 기수연, 박은식, 이소영, 곽빛나, 한동국

피고1. B

2. 주식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인

담당변호사 김정수, 김태형, 문훈성, 임경섭

변론 종결 2022. 4. 21.

판결 선고 2022. 6. 23.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5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5.부터 2022. 6.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주식회사 C는 38,894,20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1.부터 2022. 6.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값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C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B는 5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주식회사 C는 138,894,20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주강열처리,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였고, 피고 B는 현재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피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4. 10.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에게 피고 회사의 보통주식 10,000주(피고 회사 총 발행주식의 100%, 당시 원고 2,600주, D 6,400주, E 1,000주 각 보유,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3,000,000,000원(1주당 300,000원)에 매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 2012. 4. 12. 위 주식매매계약서에 관하여 공증인가 F 사무소 등부 2012년 제472호로 인증서가 작성되었다.

2)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매매 계약서

제3조(매매대금 지급조건) 매수인(피고 B, 이하 같다)은 제2조의 매매대금을 다음과 같이 매도인1) (원고, 이하 같다)의 계좌 및 현금 지급하기로 한다.

1. 계약금: 금 이억원정 - 계약체결시 지급
2. 중도금: 금 이억원정 - 2012. 4. 12.
3. 잔금: 금 이십육억원정 - 2012. 6. 29.

제4조(주식양도증서 등의 작성) 매도인은 제3조에 정한 매매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별지1과 같은 내용의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하여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은 별지 2와 같이 주식양도통지서 및 승낙서를 작성함에 있어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명의개서) 매수인은 본 매매계약 이후 매수인이 직접 하되, 매도인은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

본건 주식매매에 대한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현 대표이사 A(원고)의 임금은 금 650만 원으로 책정한다.
2. 현 대표이사 A(원고)은 2013. 6. 30.까지 근무조건이며 이후 현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후 조건 없이 사직하기로 한다(상호 협의 가능).
4. 현 대표이사 A(원고)은 퇴임시까지의 지분은 유지하고 퇴임시 조건 없이 지분을 매수인에게 양도한다.
5. 주식양수, 양도 즉시(2012. 7. 1.) 각자 대표체제로 유지하고 2012. 7. 1. 이후 정관을 변경하고 모든 법적책임은 매수인이 지기로 한다. 단 현 대표이사 A(원고)은 하등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7. 현재 유지하고 있는 영업에 대하여는 2012. 5. 30. 기점으로 매도인이 관리하고, 2012. 6. 30. 이전에 발생하는 자금 등(임금, 신설법인 공장 증축자금, 임원퇴직금의 정산, 주식배당금 등)은

정리하고 2012. 7. 1. 이후 매수인의 영업시에 발생한 자금 집행 등의 모든 결제 및 임금 등에 대하여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적극 협조한다.

다.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 지급 등

1) 피고 B는 이 사건 주식 중 D 보유의 6,400주와 E 보유의 1,000주 합계 7,400주에 관한 매매대금 2,220,000,000원을 전부 지급하고, 위 7,400주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2) .

2) 피고 B는 2013. 1. 4.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중 원고 보유의 2,600주에 관한 매매대금으로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2013. 1. 8. 위 금원 중 10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반환받았다.

라. 기타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이전부터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다가 2014. 11. 20. 사내이사직을 퇴임하였고, 2012. 9. 1. 피고 B와 함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 3. 4.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중 원고 보유의 2,600주에 관한 주식매매대금 잔금 580,000,000원[= 780,000,000원(2,600주 × 300,000원) - 기지급 매매대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변제 항변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 B는 원고에게, 2013. 1. 4. 지급한 200,000,000원 외에도 2012. 6. 25.부터 2018. 10.

1.까지 사이에 별지 '피고 B 주장 변제 내역'의 각 순번 기재와 같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계 410,412,000원을 추가로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169,588,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갑 제9 내지 12,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2012. 6. 25.부터 2018. 10. 1.까지 사이에 주식매매대금 중 410,412,000원을 분할지급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13. 2. 25.부터 2018년 4월경3) 까지 피고 B로부터 월 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받았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②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19. 4. 2.경부터 2020. 2. 19.경까지 이루어진 대화의 녹취록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미지급 주식매매대금 전체 58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피고 B 역시 미지급 주식매매대금이 580,000,000원이라는 전제에서 논의를 진행하면서 자신이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주식매매대금 중 일부를 변제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전혀 주장하지 않고 있다. 피고 B의 주장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주식매매대금으로 4억 원이 넘는 원금을 이미 변제하였다면 당연히 이를 제외하고 이 사건 미지급 주식매매대금의 지급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③ 특히 피고 B는 2019. 4. 2. 원고에게 자신이 원고에게 기지급했던 200,000,000원을 자신에게 돌려주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 2,600주를 다시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밝히고, 580,000,000원을 받아서 780,000,000원에 대해 세금을 내면 세금부담이 매우 크다("그냥 1~2억이 날아가버린다")는 취지로 원고를 설득하기도 하였다.

④ 피고 B는 원고를 제외하고 피고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였던 D, E에 대하여는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 2,220,000,000원을 2012년 10월경까지 모두 지급하였고(2012. 4. 10.경부터 2012. 10. 23.까지 1,520,912,000원이 E의 계좌로 지급되었고 2012. 10. 10.경 피고 회사 소유의 토지를 D의 남편인 G에게 매도하여 나머지 주식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인정됨),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이전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실제 경영에 참여하였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이후에도 상당기간 피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주식매매대금 중 상당부분인 58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던 상황임을 고려하면, 피고 B가 원고에게 '주식 잔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월급도 전과 같지 않으니, 이자조로 월 5,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이후 상당기간 월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크게 일반상식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⑤ 피고 B가 2012. 6. 25.부터 2018. 10. 1.까지 사이에 주식매매대금 중 410,412,000원을 분할지급하였다는 지급내역(을 제2호증의 1)과 과거거래신청 상세내역조회(을 제2호증의 2)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고 B가 위와 같이 주장하는 분할지급금 중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받았다고 인정하는 이자 상당 금원 외 나머지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⑥ 피고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특약사항에서 정한 사직일인 2013. 6. 30. 이전에는 급여에 더하여, 이후부터 2016년 8월까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계속 종사해 오는 것처럼 외형을 허위로 만들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미변제 주식매매대금의 '이자조의 급여'를 계속 지급하였고, 이와 별도로 지급한 월 5,000,000원 상당은 주식매매대금 원금 변제명목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사직일이 상호협의 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2016. 8.경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점, 피고 B 역시 2016. 1.경까지 피고 회사에서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사직일을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를 퇴사하였다거나 이후 지급한 급여가 이 사건 미변제 주식매매대금의 이자조로 지급된 것이었다는 피고 B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2) 동시이행의 항변 가) 주장의 요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미지급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는 이 사건 주식 중 원고 보유의 2,600주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명의개서를 할 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식잔대금 169,588,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해당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 제4조는 '매도인(원고)이 매매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하여 매수인(피고)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은 주식양도통지서 및

승낙서를 작성함에 있어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조는 명의개서에 대하여 '매수인은 본 매매계약이후 매수인이 직접 하되, 매도인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자신이 보유한 이 사건 주식 2,600주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주식양도증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명의개서를 직접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힘들다. 더구나 일반적으로 명의개서는 해당 주식을 발행하고 주주명부를 보유한 회사에 구하는 것이므로, 이미 피고 회사의 과반수 주식을 보유하고 경영까지 전담하고 있는 피고 B가 원고에게 명의개서의무를 동시이행항변으로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 잔금 5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의 범위에 관하여 원고는 위 주식매매대금 잔금 58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구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2018. 4. 5.부터로,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율은 민법이 정한 연 5%로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가 2018년 4월까지 이 사건 미지급 주식매매대금의 이자명목으로 월 5,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 B는 별지 변제내역과 같이 원고에게 2018. 4. 4.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2018. 4. 4.까지의 지연손해금은 모두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 잔금 58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2018. 4. 5.부터 지급함이 타당하다.

② 상법 제54조에 규정된 상사법정이율 연 6%가 적용되려면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 채권이 상법 제46조 또는 제47조에 규정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원고가 피고 B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으로 상법상 회사가 주체가 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위 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상인이 아닌 사내이사 개인으로 상인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피고B의 행위 역시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어서 상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볼 수

없어 여기에는 상법에 따른 연 6%의 법정이율이 아닌 민법에 따른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결국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 잔금 5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5.부터 피고 B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6.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580,000,000원의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138,894,207원의 가수금반환 채권(이하 '이 사건 가수금반환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현재 피고 B는 무자력 상태에 있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가수금반환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B를 대위하여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가수금반환 채권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580,000,000원의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채권은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2) 보전의 필요성 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부산진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H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감정인 I에 대한 비상장주식가치감정축탁결과, 감정인 J에 대한 시가감정축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는 적극재산으로 ① 피고 회사 주식 7,100주, ② 강원 평창군 K외 7필지 지상
13층 L호텔 M호 중 1/150 지분, ③ 이 사건 가수금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①은 산정가치가
없고, ②의 감정가액은 3,000,000원인 사실, 반면 피고 B가 소극재산으로, ① 원고에 대한
426,100,000원의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 잔금 채무, ㉠ 대출금 채무 합계 159,000,000원(= N은행
50,000,000원 + O은행 19,000,000원 + P은행 90,000,000원), ㉡ 보증채무 합계
4,992,041,000원(= 기업은행 3,759,895,000원 + Q은행 60,000,000원 + R은행
150,000,000원 + 신용보증기금 850,000,000원 + S캐피탈 172,146,000원)을 부담하고 있어,

피고 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크게 상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리고 피고 B는 위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음에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가수금반환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 B가 이에 대해 다투지 아니하므로, 보전의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

3) 피대위채권의 발생 및 범위 4) 피대위채권의 범위에 대해 살피건대, 갑 제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대차전표에서 가수금, 가지급금 계정으로 피고 B에게 지급하고 지급받은 금액을 합산하면 피고 B가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고 변제(회계상 반제처리)받지 못한 금액이 38,894,207원인 사실, 즉 위 피고 B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38,894,207원의 채권을 갖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계정별원장의 적요에 피고 B가 기재된 것을 근거로 2019. 2. 19. 피고 회사에 입금된 100,000,000원도 피고 B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해당일자 대차전표 및 H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해당 금액은 피고 회사가 피고 회사 명의로 R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입금된 돈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100,000,000원은 피대위채권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피고 B를 대위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피고 B의 위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38,894,20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0. 8. 11.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6.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 김현석

판사 위은숙

판사 김현정

별지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 B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인증서상의 매도인은 원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2) 2013. 8. 31.자 피고 회사의 '주식등 변동상황 명세서'(을 제4호증)에 따르면, 피고 B가 7,100주, 신정일이 300주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B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D, E이 보유하였던 7,400주를 양도받고 이에 대해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친 점에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원고는 소장에서는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2013. 1. 3.까지 매월 5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였다가, 2020. 11. 23. 준비서면 및 2021. 5.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는 2018년 4월까지 매월 5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였다.

4) 피고들의 대리인은 2021. 7. 21.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의견서에서 피고 B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30억 원을 상회하는 가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가수금채권의 개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 역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피고 회사의 계정별 원장, 대차전표 등을 근거로 가수금채권의 범위를 주장하였다.